

#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규정

제정 2022. 10.28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'법인'이라 칭함) "총장선임규정"에 제12조 제4항에서 위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구성 및 자격)

- ① 법인이 총장선임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할 경우, 대학은 본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원 위원(이하 '총추위 교원위원'이라 한다) 4명을 선출한다.
- ② 총추위 교원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들 중에서 선출한다.

## 제3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)

- ① 총추위 교원위원 선출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교수평의회에 총추위 교원위원 선거관리 위원회(이하 '선관위'라 칭함)를 둔다.
- ② 선관위 위원은 교수평의회에서 선임한다. 교수평의회 의장은 당연직 선관위원장이 된다.
- ③ 교수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, 선관위 위원은 총추위 교원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. 만일, 의장과 부의장이 총추위 교원위원 후보가 되고자 할 경우, 선관위 구성 전에 사임해야만 한다.
- ④ 선관위는 투표방식, 선거기간 등 투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.

## 제4조(학과별 위원 후보의 선출)

- ① 각 학과 또는 학부(이하 '학과'로 칭함)는 입후보 없이 각 학과 전임교원의 비밀투표로 학과에 배정된 교원위원 후보의 수 만큼 연기명 방식의 투표를 통해 학과별 교원위원 후보를 선출한다. 오프라인 직접투표를 시행할 경우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e-mail로 투표 할 수 있다.
- ② 학과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후보의 수는 전임교원 7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교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한다.
- ③ 소수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관위에서 교원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소속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④ 본인의 의사에 의해 총추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교원은 학과 투표 이전에 선관위에 사퇴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한다.

#### 제5조(총추위 교원위원의 선출)

- ① 총추위 교원위원은 각 학과에서 선출된 교원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재직중인 전체 전임교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오프라인 직접투표를 시행할 경우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e-mail로 투표 할 수 있다.
- ② 전체 전임교원의 직접투표는 교원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최대 4명에 대한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며, 각 교원은 본인이 속한 학과의 교원위원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③ 동일 학과 소속 교원위원 후보에 대한 투표는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.
- ④ 총추위 교원위원은 전체 득표수 다수의 순으로 4명을 선출하되 동일학과 소속 교원위원이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2인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수로 교원위원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부임일시 순으로 정한다.
- ⑥ 결원시를 대비한 총추위 예비위원은 전체 투표의 득표순으로 하되 총원은 본조 제4항의 학과별 정원 규정을 따른다.

#### 제6조(교원위원의 추천)

대학은 본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원들이 비밀보장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한 후 법인에 총추위 교원위원으로 추천한다.

#### 제7조(선관위의 해산)

선관위는 법인에 총추위 교원위원 추천 후 해산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